

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

공사명: 터미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

2020. 11

[붙임1] 석면비산 측정결과

공기중시료 분석결과서
Asbestos & other fibers by PCM

시료 번호	측정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l/min)	측정 일시 (측정 시간)	측정결과 (기준 0.01(개)f/cc)	검출석면
#1	부지경계선1	에어샘플링펌프	10.23	2020.11.25 08:00 ~ 12:20	검출한계이하(0.002f/cc)	-
#2	부지경계선2	에어샘플링펌프	10.25		검출한계이하(0.002f/cc)	-
#3	부지경계선3	에어샘플링펌프	10.24		검출한계이하(0.002f/cc)	-
#4	부지경계선4	에어샘플링펌프	10.28		검출한계이하(0.002f/cc)	-
#5	위생설비입구	에어샘플링펌프	10.22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6	작업장주변1	에어샘플링펌프	10.19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7	음압기 공기배출구1	에어샘플링펌프	10.20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8	음압기 공기배출구2	에어샘플링펌프	10.26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9	폐기물 반출구1	에어샘플링펌프	10.27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10	폐기물 반출구2	에어샘플링펌프	10.26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11	폐기물 반출구3	에어샘플링펌프	10.25		검출한계이하(0.005f/cc)	-
#B1					0.000	
#B2					0.000	

검출한계 = $(120,000 / (V \times N)) \times 0.005$, 0.002~0.005개(f/cc) 이하

N = 계수 시야 수, V = 총 포집유량(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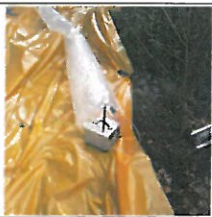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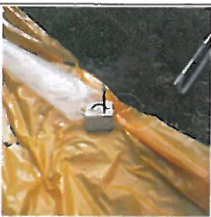




검출석면 : 석면 및 섬유상 먼지의 길이 5 μ m 이상, 직경 0.25 μ m~3 μ m, 길이 대 직경비 3:1을 기준으로 함.

- 각 측정지점은 작업여건과 풍향,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측정위치 선정함.

- 각 측정시간은 작업진행도에 따라 고려하여 측정함.

[붙임2] 비산측정사진

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	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#1 부지경계선1				#2 부지경계선2			
	측정시작시간 : 08:00	측정종료시간 : 12:10			측정시작시간 : 08:05	측정종료시간 : 12:15	
#3 부지경계선3				#4 부지경계선4			
	측정시작시간 : 08:05	측정종료시간 : 12:15			측정시작시간 : 08:10	측정종료시간 : 12:20	
#5 위생설비 입구				#6 작업장주변			
	측정시작시간 : 08:10	측정종료시간 : 09:00			측정시작시간 : 08:15	측정종료시간 : 10:25	

측정 지정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	측정 지정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#7 음압기 공기배출구1				#8 음압기 공기배출구2			
	측정시작시간 : 08:25	측정종료시간 : 09:15			측정시작시간 : 08:30	측정종료시간 : 09:20	
#9 폐기물 반출구1				#10 폐기물 반출구2			
	측정시작시간 : 08:40	측정종료시간 : 09:30			측정시작시간 : 08:45	측정종료시간 : 09:35	
#10 폐기물 반출구3							
	측정시작시간 : 11:30	측정종료시간 : 12:20					

제2018-120001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관명	(주)새날환경안전연구원	
소재지	(61020)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29번길 15 2층 201호()	
대표자성명	최진영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8. 3. 5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



㈜ 새 날 환 경 안 전 연 구 원

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 29번길 15

고용노동부지정석면조사 제2018-120001호

대표전화 : 062-571-3585

팩 스 : 062-572-3585

이 메 일 : toskf2470@hanmail.net